

株主 여러분께

임시주주총회 소집 안내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 정관 제17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일시: 2025년 1월 3일 (금) 오후 3시
2. 장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서로 95 한온시스템 본사 중역실 대회의실
3. 회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대표집행임원제 폐지 및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이수일)
 - 제2-2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박정호)
 - 제2-3호: 기타비상무이사 선임의 건 (박종호)

□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2024년 12월 19일

한온시스템 주식회사
대표집행임원 너달 쿠추카야, 나가수브라모니 라마찬드란

직인
생략



[별첨 1: 정관 일부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18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대표집행임원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소집한다. 2. 대표집행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대표집행임원을 대신하여 당해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18 조 (소집권자) 1.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u>대표이사</u> 또는 이사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자가 소집한다. 2. <u>대표이사</u> 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결에 따라 <u>대표이사</u> 를 대신하여 당해 업무를 집행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대표집행임원제 폐지 및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제 21 조 (주주총회의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집행임원으로 한다. 2. 대표집행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21 조 (주주총회의 의장) 1. 주주총회의 의장은 <u>대표이사</u> 로 한다. 2. <u>대표이사</u> 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 18 조 제 2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대표집행임원제 폐지 및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제 29 조 (정원, 자격, 보수 및 선임방법) 1. 본 회사의 이사는 9 인으로 하고, 사외이사는 3 인 이상으로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7. (생략)	제 29 조 (정원, 자격, 보수 및 선임방법) 1. 본 회사의 이사는 <u>3 인 이상 9 인 이내</u> 로 하고, 사외이사는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2~7. (현행과 동일)	대표집행임원제 폐지 및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제 32 조 (이사의 임무 및 책임) 1. 이사회는 그 구성원 중 1 인의 이사회 의장을 선임한다. 2. (삭제) 3~5. (생략)	제 32 조 (이사의 임무 및 책임) 1. <u>이사회에 의결로 대표이사를 선임한다.</u> 2. <u>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가 이사회 의장이 된다.</u> 3~5. (현행과 동일)	대표집행임원제 폐지 및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32 조의 2 (집행임원) 1. 본 회사는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을 둔다.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수, 직책, 보수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2.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이사회결의로 선임한다. 3.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임기는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각 대표집행임원 및 집행임원 선임시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제 32 조의 2 (대표이사 등) <u>1. 본 회사는 이사회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위원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u> <u>2.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u> <u>3.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은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 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 시에는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u>	대표집행임원제 폐지 및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제 32 조의 3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의 직무) 1. 대표집행임원은 회사를 대표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2. 집행임원은 대표집행임원을 보좌하고 본 회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3.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3개월에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대표집행임원과 집행임원은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5.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집행임원은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 직후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다)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제 32 조의 3 (대표이사의 직무) <u>회사의 대표이사는</u>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수립하고, 그 직후 정기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나) 안전 및 보건 관리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다) 안전 및 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마)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기타 회사의 안전 및 보건 계획에 필요한 사항	대표집행임원제 폐지 및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마)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등 기타 회사의 안전 및 보건 계획에 필요한 사항		
제 42 조 (회계장부 및 기록) 1. (생략) 2.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은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의 대표집행임원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제 2 항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4.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집행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생략) 6. 제 5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집행임원은 제 2 항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대표집행임원은 제 2 항 각 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8. 대표집행임원은 제 2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5 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 42 조 (회계장부 및 기록) 1. (현행과 동일) 2.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6 주간 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사의 대표이사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에는 제 2 항 각호의 서류에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4.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의 1 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현행과 동일) 6. 제 5 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 2 항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대표이사는 제 2 항 각 호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 주간 전부터 본사에 5 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 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8. 대표이사는 제 2 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 5 항에 의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대표집행임원제 폐지 및 대표이사 체제로 변경
부 칙 (신설)	부 칙 (2025.01.03) 이 정관은 개정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시행일자 명시



[별첨 2: 이사 후보자에 관한 사항]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 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수일	1962.04.26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주)	이사회
박정호	1963.05.14	사내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주)	이사회
박종호	1964.01.12	기타비상무이사	해당사항 없음	없음 주)	이사회
총 (3) 명					

주) 당사의 최대주주인 한앤코 오토홀딩스 유한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를 2대 주주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에게 매도하는 주식매매계약을 2024년 10월 31일 체결하였습니다. 본 계약에 따른 거래 종결 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매수인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로 변경될 예정이며, 상기 이사 후보자 3인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의 임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2024년 11월 1일 공시한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수일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대표이사 부회장	2006~2008	한국타이어 마케팅담당 상무	해당사항 없음
		2009~2012	한국타이어 미주지역본부장 전무	
		2013~2016	한국타이어 중국지역본부장 부사장	
		2017	한국타이어 마케팅본부장/경영운영본부장/유통사업 본부장 부사장	
		2018~현재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부회장	
박정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부사장	2008~2012	한국타이어 구매 및 전략기획담당 임원	해당사항 없음
		2013~2015	한국타이어 미주)마케팅담당 상무	
		2016~2018	한온시스템 글로벌구매본부장 전무	
		2019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아태중아부문장 전무	
		2020~2021	한국아트라스비엑스 경영총괄 전무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202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OE부문장 부사장	
		2022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마케팅총괄/OE혁신본부장 부사장	
		2023~현재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마케팅총괄/경영혁신 총괄 부사장	
박종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주) 사내이사 한국엔컴퍼니 (주) 기타비상무 이사	1987~1999	국세청, 기획재정부 사무관, 서기관	해당사항 없음
		1999~2011	LG전자 상무	
		2011~2015	한국타이어 기획재정부문장 전무	
		2015~2018	한온시스템 경영기획본부장 부사장	
		2018~2020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재경본부 부사장	
		2020~2021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경영지원총괄 부사장	
		2021~2024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경영지원총괄 사장	
		2021~현재	現)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내이사	
		2022~현재	現) 한국엔컴퍼니 기타비상무이사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부실기업 경영진 여부·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수일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박정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박종호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끝)

